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5.9)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	14
8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	16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5. 8

2.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기구신설(안 제3조)
 - 명 칭 : 규제개혁추진단
 - 소 속 : 부군수 직속
 - 설치기간 : 설치일부터 1년(한시기구)
- 나.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 규제개혁추진단
 - 사무인수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획감사실
 - 사무이관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5. 8

2. 개정이유

-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지방소득세 부과방식 변경,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인력 증원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별표 3)
 - 658명 → 668명(증 10명)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이하 정원 : 증 10명
 - 현행 : 586명(본청265명), 의회11명. 직소기관91명, 사업소41명, 읍37명, 면137명
 - 조정 : 596명(본청275명), 의회11명. 직소기관91명, 사업소41명, 읍37명, 면137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지방소득세 부과방식 변경,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인력 증원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5. 8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법적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군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군의원 위촉 및 제척규정 삭제함
(안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제4호)
 - (삭제)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위촉
 - (삭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군의회 의원 제척
 -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 관련
- 나. 경상남도 개선권고 사항 반영함(안 제10조제4항후단)
 - (삭제)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 나.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법적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군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5. 8

2. 제안이유

- 마리면 대동리 서편마을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 마리면 대동리 5개(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행정리로 이미 구분 확정되어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마리면 대동리의 행정리를 조정함(안 별표 2)
 - 신기, 시목, 엄대, 동편 ⇒ 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 나. 마리면 대동리 이장의 정수를 조정함(안 별표 2)
 - 4명 ⇒ 5명(증 1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마리면 대동리 서편마을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 마리면 대동리 5개(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행정리로 이미 구분 확정되어 실질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동·서편 마을을 1개 행정리로 통합운영 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5. 8

2. 제안이유

-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23조제11항)
 - 대상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기간 : 각각 10일
 - 사용방법 : 한 번만 분할 사용,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할 수 없음
복무관리부서 사전허가 거쳐야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4.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5. 8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2014. 1. 1.)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 (현행) 2013년 12월 31일 ⇒ (변경) 2014년 12월 31일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2014. 1. 1.)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적합·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5. 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5. 8

2. 제안이유

-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거창군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운영조례」를 통합하고,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와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함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이용시설 :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나.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
 -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운영 및 보급, 청소년의 창작·정보활동 지원 및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 다.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청소년활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마.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바.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거창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거창군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한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이 적합·타당하고 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5.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4. 5. 2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5. 8

2. 요구이유

- 월성 청소년 수련원내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비의 절감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국민여가캠핑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 국민여가캠핑장
- 나. 위 치 :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청소년수련원 내)
- 다. 규 모

구 분	캐 빈 하우스	방갈로	야영 데크	방문자 센터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진입 도로	기타
면적 (수량)	4동 (42.61㎡) (170.44㎡)	3동 (31.53㎡) (94.59㎡)	14동 (5×5)	1동 (53.46㎡)	1동 (76.33㎡)	1동 (72.80㎡)	200m	부대 시설

※ 부대시설 : 물탱크, 야외공연장, 전기발전 시설 등

- 라. 사업내용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마. 대상사무

- 시설 : 국민여가캠핑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운영 :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바.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사. 수탁자격

- 경상남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자. 예산지원 : 없음(캠핑장 사용료로 운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월성 청소년 수련원내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 준공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비의 절감 및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국민여가캠핑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